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1. 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3월 28일

○ 회부일자 : 2001년 3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1. 4. 18),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이 범 진)

가. 제안이유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 법령·법규정비계획에 따라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자에 국한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부녀”라는 용어를

⇒ “여성”으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부녀”라는 용어를 ⇒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남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부녀의용소방대”를 각각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5조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34조 본문, 별지 제4호서식 제목중 “부녀대”를 각각 “여성대”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전단중 “부녀대장”을 각각 “여성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복제(부녀대원)”을 “복제(여성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녀대원”을 “여성대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원서중 “부녀의용소방대장”을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① (생략)</p> <p>1. ~ 2. (생략)</p> <p>② 소방서와 읍에는 <u>부녀의용소방대</u>(이하 "<u>부녀대</u>"라 한다)를 설치한다. 또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p> <p>③ 의소대(<u>부녀대</u> 제외)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u>지역대</u>"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명칭) ① (생략)</p> <p>② <u>부녀대</u>의 명칭은 제1항중 의용소방대를 <u>부녀의용소방대</u>로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임용기준) 의소대는(<u>부녀대</u>, 지역대 포함한다)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p> <p>① ~ ③ (생략)</p> <p>제6조(조직) ① (생략)</p> <p>② <u>부녀대</u>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p> <p>③ (생략)</p> <p>제7조(대장등의 임무) ① ~ ② (생략)</p> <p>③ <u>부녀대</u>장은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p> <p>④ (생략)</p>	<p>제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여성</u>의용소방대(이하 "<u>여성대</u>"라 한다)</p> <p>.</p> <p>③ . . . (<u>여성대</u> 제외)</p> <p>.</p> <p>제3조(명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여성대</u></p> <p>. <u>여성</u>의용소방대</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임용기준) (<u>여성대</u>,)</p> <p>.</p> <p>.</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여성대</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대장등의 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여성대</u>장</p> <p>.</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업무분장) ① (생략)</p> <p>② <u>부녀대</u>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 구호반을 두며 부·반명 업무분장은 별지 제4호와 같다.</p> <p>③ ~ ④ (생략)</p>	<p>제8조(업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p> <p>㉠ <u>여성대</u></p> <p>.</p> <p>.</p> <p>.</p> <p>㉡ ~ ㉢ (현행과 같음)</p>
<p>제9조(대의 정원) ① 소방서와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u>부녀대</u>의 인원은 50명내외로 하며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지역대별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면지역은 의소대 30명, <u>부소대</u> 20명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대의 정원) ① <u>여성대</u></p> <p>. <u>소대</u></p> <p>.</p> <p>. <u>여성대</u></p> <p>. <u>소대</u></p> <p>㉠ (현행과 같음)</p>
<p>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부대장 및 <u>부녀대장</u>과 지역대장은 시지역의 경우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며 군지역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한다. 이 경우 부대장, 지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0조(대원의 임용) ① <u>여성대장</u></p> <p>.</p> <p>.</p> <p>.</p> <p>.</p> <p>㉡ ~ ㉢ (현행과 같음)</p>
<p>제11조(대장등의 임기) 대장 및 <u>부녀대장</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1조(대장등의 임기) ① <u>여성대장</u></p> <p>.</p> <p>.</p>
<p>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u>부녀대 포함</u>)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p> <p>.</p> <p>. (<u>여성대 포함</u>)</p> <p>.</p> <p>.</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대장, 부대장, <u>부녀대장</u>, 지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대장 및 <u>부녀대장</u>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 . , , <u>여성대장</u> . . .)<u>여성대장</u></p>

관계법령 발취

□ 소방법 제86조(의용소방대의 설치)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複製)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남녀차별 법령, 법규 심사결과(여성 11250-127, 2001. 2. 14)

조 례 명	개선·검토가 필요한 사항	검토 및 개선사항	검토부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부녀"라는 용어변경 → 부녀라는 용어가 여자에 국한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 내포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여상상이 증시되고 여성의 사회적 공헌도가 점차 요구되는 시점에서 ○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할 필요성 공감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계기마련	방 호 구조과